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방송통신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상 위치정보(기반서비스)사업 관련 신고·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신고 업무 방송통신사무소 권한 위임 근거 신설
(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)
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에 근거하여 위원회 본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비교적 관행적인 위치정보(기반서비스)사업 관련 신고·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조항(안 제37조의2제1항)을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의 제목 “(업무의 위탁)”을 “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
2. 법 제5조의2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
3. 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·상속 및 합병·분할 신고에 관한 업무
4. 법 제8조제1항·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·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
5. 법 제9조제1항·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

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

6. 법 제9조의2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

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

7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·상속

및 합병·분할 신고에 관한 업무

8.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·폐업

신고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7조의2(업무의 위탁)	<신 설>	제37조의2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	①	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 위치정보사업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. 법 제5조의2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. 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·상속 및 합병·분할 신고에 관한 업무 4. 법 제8조제1항·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·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 5. 법 제9조제1항·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

① · ② (생략)	<u>한 업무</u> 6. 법 제9조의2제1항 ·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· 상속 및 합병 · 분할 신고에 관한 업무 8.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·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 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645